

수업관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효과적인 수업관리를 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각 학부(과)의 수업관리에 적용한다<개정 2007.09.01>

제3조(수업시간표 편성) ① 교양 및 학부(과)의 교과목 수업시간표는 교학지원처에서 조정, 관리한다.
<개정 2013.12.4>

② 수업시간표 편성 시 교양과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
제4조(수업시간변경) ① 확정된 수업시간표의 담당교수, 요일, 시간 등의 변경은 불가하며,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교학지원처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담당교수가 임의로 수업시간 등을 변경하여 학사행정에 물의가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학지원처장은 경위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.

제5조(교시별 강의시간) 교시별 강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.

교시	평일 주간	평일 야간	주말 주간	주말 야간
1교시	09:00~09:50	19:00~19:50	09:00~09:50	19:00~19:50
2교시	10:00~10:50	20:00~20:50	10:00~10:50	20:00~20:50
3교시	11:00~11:50	21:00~21:50	11:00~11:50	21:00~21:50
4교시	12:00~12:50	22:00~22:50	12:00~12:50	22:00~22:50
5교시	13:00~13:50		13:00~13:50	
6교시	14:00~14:50		14:00~14:50	
7교시	15:00~15:50		15:00~15:50	
8교시	16:00~16:50		16:00~16:50	
9교시	17:00~17:50		17:00~17:50	
10교시	18:00~18:50		18:00~18:50	

<개정 2012.12.21>

제6조(학습반의 분반) 학습반의 분반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 동일 요일, 동일 교시로 분반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담당교수가 동일할 경우는 제외한다.<개정 2007.09.01>

제7조(학습반의 폐강) ① 수강인원이 교양과목 20명, 전공이론과목, 계열선택과목, 실험·실습·실기과목은 각 8명 미만인 강좌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전에 폐강 처리한다. 단, 협력(업적)강좌와 음악관련전공 실기 과목은 예외로 한다.<개정 2014.8.25>

② 위 제1항을 적용에 있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휴학 등으로 인한 전공 현재인원, 필수교과목 여부, 다음 학기 개설여부를 고려 담당교수가 요청 교학지원처장이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8조(교수의 출강) 전임교원은 주4일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원의 책임강의시간) 전임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 다만, 보직교원의 책임시수는 전임교원 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의한다.<개정 2019.1.23.>

제10조(휴·보강계획)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경우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하여야 한다.<신설 2008.09.01>

제11조(대강) 교과목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강을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신설 2008.09.01>

제12조(수업확인) 교학지원처 수업담당자는 당일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학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타교출강) 전임교원은 타 교, 타 기관에 출강을 금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타교 출강계획서를

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출강할 수 있다.

제14조(강의계획서) ① 강의계획서는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형식은 강의목표(강의개요, 기대효과, 활용도 등), 수업운영방법(강의, 토론 및 세미나, 실험실습, 시청각, 가상강좌, 기타) 과제물, 성적평가방법 및 기준, 교재 및 참고서, 활용수업기자재, 수업진행계획 및 방법, 연구실 및 연락처, 면담시간, E-mail 등을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. 실습과목은 실습계획서도 함께 작성한다.

② 교원(시간강사 포함)은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, 교내전산망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열람한 후 수강신청과 수업참여, 과제물 제출 등의 학업과정에 착오가 없도록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.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5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9. 1)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8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